

사립대학 회계 및 적립금에 관한 연구

최 혁*

Ⅰ 요약

사립대학은 2010년도부터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결산을 하게 되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사립대학의 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기금회계를 분리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근거하여 사립대학의 회계 및 적립금에 관한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의 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면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은 쟁점사항이 되어왔다.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가상각비만 허용할지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로 허용할지가 문제인 것이다. 등록금 회계는 등록금 수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등록금의 수입 중에서 비용을 차감한 일정 부분은 적립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기 운영차익 중 일부를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립대학 회계제도는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사립대학, 등록금회계, 기금회계

I. 서 론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개정(2009.12.22)되어 2010년도부터 개정된 회계 규칙에 따라 결산을 하게 되었다.

* 세종대학교, 직원, hyukpn@empas.com,

〈논문 투고일〉 2012-07-18

〈논문 수정일〉 2012-08-14

〈게재 확정일〉 2012-09-03

교육과학기술부가 공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학교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재원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둘째,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도입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셋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이익과 손실을 시가로 평가하여 사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대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 분리제도는 사립대학 회계에 변화를 일으켰고 대학 회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자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하나의 회계로 운영되었던 것을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로 분리하여 기부금 수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립대학 적립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회계 분리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회계를 분리함으로써 등록금 회계의 수입원과 기금회계의 수입원을 구분하여 등록금 수입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회계분리 제도는 기부금 운영과 적립금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지만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축적해 왔다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개정된 회계제도를 운영하면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은 쟁점사항이 되어왔다. 개정된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 금액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다. 2010년도 결산에서는 감가상각비와 운영차익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2011년도 결산에서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가 신설되어 건물의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개별 학교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은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쟁점사항을 분석해 볼 것이다. 회계적 관점에서 사립대학 회계제도를 분석하여 회계제도의 타당성을 규명하고 대학 적립금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201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한다. 둘째,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셋째, 유가증권에 대해 시가 평가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개정내용은 대학 적립금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이 적립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립금을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이를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 분리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등록금 회계에서 기금 회계로의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

기부금 수입과 기금 관련 계정과목은 기금회계에 계상하며, 당해연도 기부금수입을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대체분개를 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금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적립금을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목적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표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내용(회계 분리)

종전	개정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의 지출로 계상하여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 및 퇴직적립금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의 지출로 계상하여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그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다.
〈신설〉	③제2항의 기금회계는 제1항의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하며, 기금회계의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수입란에 당해적립금에 대응된 각종 기금의 인출액을 인출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기금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0년도 결산에서는 감가상각비와 운영차익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2011년도 결산에서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서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건물의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해졌다.

3. 감가상각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 유형고정자산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건축물 1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건축물 2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연구기자재	5년	교육, 연구 및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기계 비품	5년	연구 기자재를 제외한 기계장치, 각종 기구 및 각종 집기비품(실험연구용 시설 및 기계포함, 단 실습용 선박 및 항공기는 12년을 적용함)
차량운반구	5년	자동차 및 그 밖의 운반구
소프트웨어	5년	전산 프로그램 등
도서	5년	도서 단, 계약기간에 따른 해외저널, 학술데이터베이스 의 전자적 구독 등은 사용기간으로 함
□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 사용권

감가상각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기중에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취득 또는 처분한 날짜에 관계없이 취득하거나 처분한 달을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도록 하여 자산재평가로 인한 건축적립금의 추가 적립을 규제하였다.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고정자산 증가분을 법인기본금 및 기타기본금으로 대체한 금액에 대해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고정자산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대체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가 미경과한 경우, 기간경과분에 대하여는 기본금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대체하고 미경과분(당기포함)에 대해서는 기본금을 전기이월운영차액으로 대체한다. 미경과분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기본금을 연차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고 일시에 기본금을 전기이월운영차액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감가상각 도입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비용 배분이 가능해져서 교육원가 산정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표시하게 되었다.

〈표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내용(감가상각)

종전	개정
제34조(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②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신설〉	③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신설〉	⑤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4. 유가증권 평가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장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유가증권의 경우, 매입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하고 기부받은 유가증권은 평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유가증권 장부가액을 증가시킨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부채항목이 아닌 자산항목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표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내용(유가증권 평가)

종전	개정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이하로 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환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동일〉

III. 사립대학 회계 및 적립금 분석

1. 사립대학 적립금의 용도

사립대학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되고 적립목적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으로 구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적립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도(138개교)				2008년도(140개교)				2009년도(134개교)			
	당년도 (주1)	누적액(비중) (주2)	증감율 (주3)		당년도 (주1)	누적액(비중) (주2)	증감율 (주3)		당년도 (주1)	누적액(비중) (주2)	증감율 (주3)	
합계	13,417	54,023 (100.0)	-		13,295	61,841 (100.0)	14.5		13,960	69,493 (100.0)	12.4	
연구 기금	1,022	4,370 (8.1)	-		1,233	5,565 (9.0)	27.4		1,406	6,381 (9.2)	14.7	
건축 기금	5,283	24,236 (44.9)	-		6,122	28,251 (45.7)	16.6		6,704	32,001 (46.0)	13.3	
장학 기금	964	4,351 (8.1)	-		864	5,033 (8.1)	15.7		904	5,955 (8.6)	18.3	
퇴직 기금	199	886 (1.6)	-		178	970 (1.6)	9.5		168	1,000 (1.4)	3.1	
기타 기금	5,949	20,180 (37.4)	-		4,897	22,022 (35.6)	9.1		4,778	24,156 (34.8)	9.7	

(주1) 당년도 : 당해연도 적립액

(주2) 누적액 : 현재까지 누적 적립액

(주3) 증감율 : (당해연도 누적액-전년도 누적액)/전년도 누적액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년 11월)

2009년도 교비회계 적립금 누적액 비중은 건축기금 46%(3조 2,001억원), 기타 기금 34.8%(2조4,156억원), 연구기금 9.2%(6,381억원), 장학기금 8.6%(5,955억원), 퇴직기금 1.4%(1,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의 비중이 80.8%로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2011년도 적립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서울지역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기타기금	합계
적립금	381,625,258	1,475,273,646	647,229,508	24,498,819	724,295,661	3,252,922,892
비율	11.7	45.4	19.9	0.8	22.3	100

(주) 서울지역 사립대학 20개를 대상으로 2011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함.

출처 : 한국대학교육연구소(2012년 6월)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2011년도 적립금 비중은 건축기금 45.4%, 기타 기금 22.3%, 장학기금 19.9%, 연구기금 11.7%, 퇴직기금 0.8%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의 비중이 67.7%로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립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건축기금과 기타기금 중에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립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사용목적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건축적립금은 건축에 소요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김우영, 2009).

적립금 사용으로 인한 효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와 장학 적립금이 낮다면 적립금 사용으로 인한 효익이 현재 구성원에게 주어질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은 현시점에서 부담하고 효익이 미래에 발생한다면 현재 구성원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적립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의 적립을 제한한다면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 등록금 회계의 기금회계 전출금

사립대학 회계규칙을 적용하면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은 쟁점사항이 되어왔다. 2010년도 결산에서는 감가상각비와 운영차익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2011년도 결산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이 허용되었다. 즉 2011년도부터는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만큼만 허용되고 당기운영차액은 불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가상각비만 허용할지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로 허용할지가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외에 당기운영차액 전액을 허용할 경우, 대학의 당기운영차액 수준에 따라 전출 허용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금적립에 객관성보다 임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 금액에 당기운영차액 전액을 포함하는 것은 기금 적립 적정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 금액에 감가상각비만 허용할 경우, 개별 대학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기금의 적립과 인출은 개별 대학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건물 신축을 위한 지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건축기금 인출도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김수경, 2011). 기금 적립에 있어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적립이 가능해야 개별 대학별 건축 계획을 반영한 기금 적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 금액에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 금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기금적립 및 등록금회계전입금(기금회계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표 7〉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기금적립 및 등록금회계전입금

(단위 : 천원)

구분	기금적립	등록금회계전입금	비율
A대학	27,062,223	5,489,830	20.3
B대학	14,337,369	9,084,302	63.4
C대학	26,195,148	3,680,000	14.0
D대학	57,025,353	15,359,026	26.9
E대학	4,395,354	1,839,641	41.9
F대학	29,418,036	6,000,000	20.4
G대학	11,922,790	4,490,855	37.7
H대학	55,924,677	15,000,000	26.8
I대학	7,500,000	4,641,513	61.9
J대학	8,752,958	3,460,331	39.5
K대학	123,334,091	23,716,095	19.2
L대학	180,521,886	11,213,952	6.2
M대학	46,342,738	10,200,000	22.0
N대학	28,914,389	11,427,538	39.5
O대학	87,338,866	5,716,438	6.5

(주1) 서울지역 사립대학 15개를 대상으로 2011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함.

(주2) 비율 : 기금적립 중에서 등록금회계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등록금회계전입금/기금적립)

출처 : 한국대학교육연구소(2012년 6월)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기금적립 중에서 등록금회계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기금적립 중에서 등록금회계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9.7%로 나타났으며, 건물의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이 허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등록금 회계의 수입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록금 회계는 등록금 수입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등록금 회계의 운영수익은 등록금 수입뿐만 아니라 전입금 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 수입으로 구성 되어 있다.

등록금회계 수입 중에서 등록금 수입과 등록금외 수입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등록금회계 수입 구성

(단위 : 백만원)

지역	등록금수입 구성비율	학교수	등록금회계 수입 구성비		
			평균 수입총액	평균 등록금수입	평균 등록금외수입
수도권	50% 미만	3(1.9)	65,071	11,457(17.6)	53,613(82.4)
	50~60%	4(2.6)	1,212,716	708,849(58.5)	503,866(41.5)
	60~70%	7(4.6)	1,871,862	1,212,355(64.8)	659,506(35.2)
	70~80%	14(9.3)	2,266,191	1,731,659(76.4)	534,532(23.6)
	80~90%	23(15.1)	1,856,365	1,582,936(85.3)	273,428(14.7)
	90%~100%	13(8.6)	769,868	700,366(91.0)	69,502(9.0)
지방	50% 미만	8(5.2)	290,841	79,061(27.2)	211,779(72.8)
	50~60%	7(4.6)	506,321	293,129(57.9)	213,192(42.1)
	60~70%	3(1.9)	278,405	184,386(66.2)	94,018(33.8)
	70~80%	20(13.2)	1,959,314	1,497,421(76.4)	461,893(23.6)
	80~90%	37(24.3)	1,876,443	1,599,598(85.2)	276,844(14.8)
	90%~100%	13(8.7)	834,859	763,119(91.4)	71,740(8.6)
전체평균		152(100)	1,227,038	935,025(76.2)	285,326(23.3)

(주1) ()안은 비율임

(주2) 대학알리미 2010년 대학별 결산자료를 근거로 함

출처 : 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의 쟁점 분석(김수경, 2011년, 교육재정경제연구)

위의 표를 보면, 등록금 회계에서 등록금 수입의 비중은 평균 76.2%이며 등록금의 수입의 비중은 평균 23.3%이다. 즉, 등록금 회계의 수입은 등록금 수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의 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등록금 회계는 등록금 수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등록금의 수입 중에서 비용을 차감한 일정 부분은 적립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당기운영차액 전액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당기운영차액 전액을 전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타당성이 없다(김수경, 2011). 당기운영차익 중 일부를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등록금 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금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3. 사립대학 적립금의 원천

최근 사립대학에 대한 주요 논쟁사항이 등록금과 적립금이다.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적립금은 이월금과 성격이 다르다. 이월금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다음회계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다. 반면 적립금은 회계연도의 구분 없이 누적될 수 있고 집행기한이 없다(김수경, 2009).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투자에는 거액이 소요되며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과도한 적립금은 등록금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했으므로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지 않는다면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이 적립금의 원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등록금이 교육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연도의 등록금을 교육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등록금 환원율이다. 등록금 환원율이 높은 대학이 적립금 금액도 크다면 등록금이 적립금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적립금의 원천에 대한 연구결과(김우영, 200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금 환원율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의 등록금 환원율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등록금 환원율이 100%

미만인 대학은 5개 대학이었으며 등록금 환원율이 150%를 초과하는 대학은 5개 대학이었다. 전체적으로 등록금환원율 평균은 129.4%로 등록금 보다 교육비 지출액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학교는 등록금 환원율이 100%미만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100%를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등록금이 적립금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일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원천으로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하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기부금 순위와 등록금 순위를 적립금 순위와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의 기부금과 등록금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중에 기부금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대학은 10개 대학이었고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중에 등록금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대학은 6개 대학이었다. 기부금 상위 20위 내에 속하면서 등록금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대학은 3개 대학이었다. 기부금 상위 20위 내에 속하면서 등록금환원율이 100%미만인 대학은 1개 대학이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립금 순위가 상위에 있으면서 등록금 환원율이 100%미만이고 기부금 순위는 낮고 등록금 순위는 높은 경우일 것이다. 등록금 환원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등록금이 전액 교육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적립금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대학 중에 등록금 환원율이 100%미만이고 등록금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대학은 1개 대학이었다. 적립금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대학 중에 등록금환원율이 최고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기부금 순위도 높았고 등록금 순위도 높았다. 따라서 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외에 기부금이나 교육외수입에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 적립금의 원천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등록금을 원천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부 대학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을 인출해서 교육비로 사용하면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대학의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등록금 환원율이 낮으면서 등록금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등록금환원율이 높으면서 등록금이 높은 경우는 교육의 질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4. 사립대학 회계 규칙 정비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에 따른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의하면 상장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상장

유가증권의 경우, 매입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하고 기부받은 유가증권은 평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비상장유가증권 중 기부받은 유가증권은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 가치가 명백히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폐업 등으로 실질 가치가 명백히 하락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유가증권이라도 감액하여 유가증권의 실질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에 따른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한국시학진흥재단)에 따라 기존 상각자산에 대한 기본금은 모두 감소시키고 기존 토지에 대한 기본금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기본금을 감소시키는 규정이 없어서 토지는 처분되더라도 처분된 토지의 기본금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다. 토지는 감소되고 기본금만 계상되어 있는 것은 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처분된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금 계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회계상 타당할 것이다.

IV. 결 론

사립대학은 2010년도부터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적용하여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구분, 감가상각 도입, 투자유가증권 시가평가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회계규칙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회계규칙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적립금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개정된 회계규칙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적립금을 적립목적에 따라 구분한 결과에 의하면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의 비중이 높았다. 건축기금과 기타기금 중에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립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의 적립을 제한한다면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당기운영차액 전액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당기운영차액 전액을 전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타당성이 없다. 당기운영차익 중 일부를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 전출이 가능하도록

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등록금 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금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립대학 적립금의 원천은 등록금환원율, 등록금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적립금을 인출해서 교육비로 사용하면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대학의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등록금 환원율이 낮으면서 등록금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등록금환원율이 높으면서 등록금이 높은 경우는 교육의 질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회계상 문제점들에 대해 사립대학 회계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폐업 등으로 실질 가치가 명백히 하락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비상장유가증권이라도 감액하여 유가증권의 실질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처분된 토지의 기본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있는데 처분된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금 계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회계상 타당할 것이다.

사립대학 회계제도는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경. 2009. 사립대학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181-206.
- 김수경. 2011. 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의 쟁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223-247.
- 김우영. 2009. 사립대학 적립금 관리의 이슈와 개선방안. 한국사학진흥재단.
- 윤석철, 김병기. 2003. 한국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3권 제1호. 133-166.
- 이동규. 2001. 사립대학의 경영과 회계. 선학사.
- 최철호. 2008.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8권 제1호. 73-88.
- 한국사학진흥재단. 201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에 따른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 한문식. 2002. 사립대학 회계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A study on the accounting and accumulated money of private university

Choi, Hyuk*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finance and accounting rule of private school institute has been applied to private university since 2010 fiscal year. According to the finance and accounting rule of private school institute, accounting system is separated into 'tuition accounting' and 'fund accounting'. It aims at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private university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on the accounting rule and accumulated money of private university.

The issue of transference from tuition accounting to fund accounting is whether to include net income besides depreciation cost. Revenue of tuition accounting consists of tuition and others. It may be appropriate to include some profit in transference from tuition accounting to fund accounting.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finance and accounting rule of private school institute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accounting.

Key Words : private university, tuition accounting, fund accounting

* Sejong university